

2014

알기쉬운 주택지원사업 안내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주택지원사업이란?

주택지원사업이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1.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2.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신청절차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자,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제출 → 광역지자체 사업계획서 접수 광역지자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 신재생에너지센터

☀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천원, VAT포함)

구 분	지 원 범 위		보 조 금 지 원 단 가	가 산 지 역 지 원 단 가
태 양 광	고정식	2.0kW이하	1,110/kW	1,330/kW
		2.0kW초과 3.0kW이하	940/kW	1,120/kW
태 양 열	평판형 · 진공관형	7.0㎡이하	10.0MJ/㎡ · day초과	520/㎡
			7.5MJ/㎡ · day초과	480/㎡
			10.0MJ/㎡ · day이하	570/㎡
			7.5MJ/㎡ · day이하	460/㎡
	7.0㎡초과 14.0㎡이하	7.0㎡초과 14.0㎡이하	10.0MJ/㎡ · day초과	460/㎡
			7.5MJ/㎡ · day초과	420/㎡
			10.0MJ/㎡ · day이하	500/㎡
			7.5MJ/㎡ · day이하	400/㎡
	14.0㎡초과 20㎡이하	14.0㎡초과 20㎡이하	10.0MJ/㎡ · day초과	420/㎡
			7.5MJ/㎡ · day초과	390/㎡
			10.0MJ/㎡ · day이하	460/㎡
			7.5MJ/㎡ · day이하	370/㎡
지 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790/kW	940/kW
		10.5kW초과 17.5kW이하	610/kW	730/kW
연 료 전 지	1kW이하		31,570/kW	37,880/kW

※ 소형풍력은 별도 검토 후 지원

※ 가산지역은 '2014년 주택지원사업 공고' 참조

사업 신청

신청자가 직접 에너지원과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택지원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  신청자가 직접 참여기업 선택
-  사업 진행상태 및 관련 정보 실시간 확인
-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및 지급
-  다양한 설치사례 통한 최적의 설치조건 등 비교 가능

☞ 사업 추진절차





사업 진행절차 및 주의사항

1. 신청자가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 | | |
|-----------|---|
| <에너지원 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가 주택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 풍력)을 선택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택지원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사업소개>, <제품 및 기업소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
|-----------|---|

2. 신청자는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 | | |
|--------------------|---|
| <참여기업선택 및 계약검토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의 설치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으로 계약 검토 요청을 합니다. (※유선통화 필수) >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기업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이 모두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기업에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 특정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 |
|--------------------|---|

3.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 | | |
|--------|---|
| <계약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이 계약검토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 합니다. >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 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
|--------|---|

4.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신청서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합니다. |
|----------|--|

5.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진행현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에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
|--|--|



<예치금 예치>

- 신청서검토를 완료한 후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 요청 및 가상계좌번호 발급안내 SMS를 발송합니다.
- >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가상계좌번호를 직접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주택지원 홈페이지 내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현황 ▶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가상계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설비 설치>

- >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 일조권, 조망권 등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 >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사업완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공고 참조)

7. 참여기업은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하며,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 예치금 및 보조금 지급동의를 합니다.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 합니다.
- >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 SMS를 발송하고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평가 후 예치금 및 보조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 >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가상계좌 예치금 및 보조금 지급동의를 없더라도 자동 지급동의 처리되어 참여기업 측으로 지급됩니다.

8.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 발견 시 참여기업 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합니다.

<고장접수 지원센터>

- >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 >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 >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로 연락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ascenter.energy.or.kr/>

태양광 주택이란? (전기 생산)

- ①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 ②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 이하이며 3kW 설비 설치 시, 약 23㎡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 보조금 지원 단가 및 예시

(단위 : 천원, VAT포함)

구 분		설치용량	보조금 지원단가	보조금(예시)
태 양 광	고 정 식	1kW	1,110/kW	1,110
		2kW		2,220
		3kW	940/kW	2,820

※ 보조금(예시) 산출식 : 설치용량 X 보조금 지원단가 =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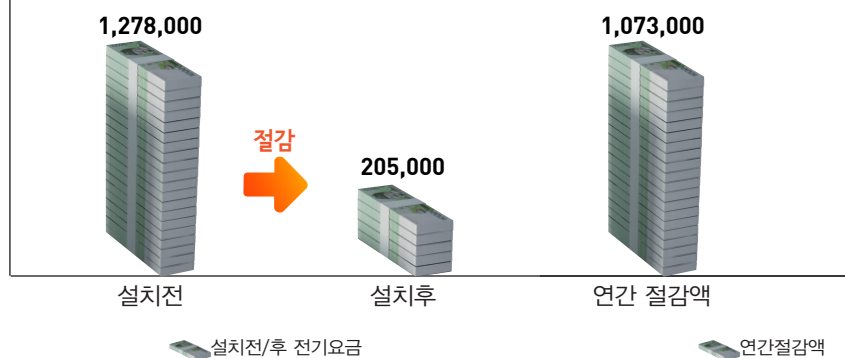
※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액은 참여기업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다수의 참여기업과 협의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설치 효과

예시1

월 전력사용량이 450kWh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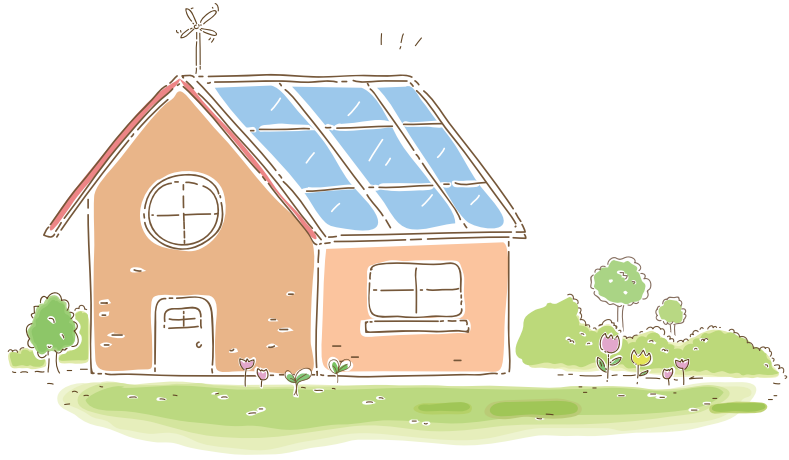
(단위 : 원)



※ TV 수신료, 자동차세 할인, 초과요금, 기타 수수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절감효과(예시) 산출 내역은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절감 효과는 설치 장소 및 환경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여기업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주의사항

- ①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의 자가소비발전량과 권장소비용량을 비교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설비 권장설치 용량표]

전기사용량 / 태양광용량	2kW이하	2.5kW이하	3kW이하
300kWh/월 이하	○		
300kWh/월 초과 ~ 350kWh/월 이하		○	
350kWh/월 초과			○

※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500kWh 이상인 단독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설치 시 감리원 배치 및 설치완료 후 안전 관리자 선임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 ①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상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관련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주택 보급현황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주택수	14,498	9,142	14,895	26,364	28,990	45,530	25,409	164,828

태양열 주택이란? (온수 생산)

- 태양열 주택이란 태양열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 가구당 지원규모는 20㎡ 이하이며 10㎡ 설비 설치 시, 약 12㎡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주택용 태양열 설비는 온수 위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구당 지원규모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 단가 및 예시

(단위 : 천원, VAT포함)

구 분		설치용량	보조금 지원단가	보조금(예시)
태양열	평판형 · 진공관형	10㎡ (10.0MJ/㎡ · day초과)	460/㎡	4,600
		20㎡ (10.0MJ/㎡ · day초과)	420/㎡	8,400

※ 보조금(예시) 산출식 : 설치용량 X 보조금 지원단가 =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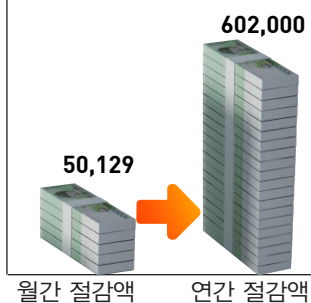
※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액은 참여기업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다수의 참여기업과 협의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설치효과

예시1

연료가 도시가스인 주택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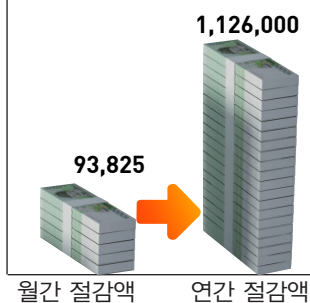


도시가스 사용주택

예시2

연료가 실내등유인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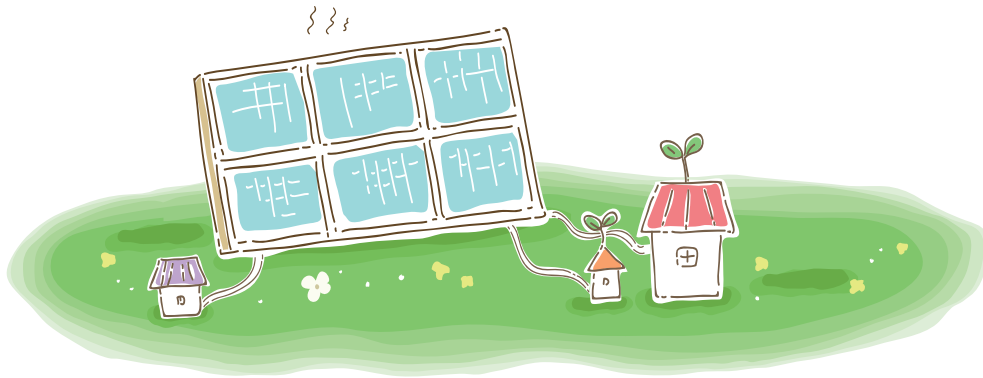
(단위 : 원)



등유 사용주택

※ 절감효과(예시) 산출 내역은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절감 효과는 설치 장소 및 환경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여기업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태양열 설비 설치 시 주의사항

- ① 주택용 태양열설비는 급탕사용을 주 용도로 합니다. 태양열설비 이외의 난방설비 (가스 · 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② 하절기 설비 부하량을 고려하여 설치 용량을 결정 하셔야 합니다. 과용량 설치시, 설비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태양열주택 보급현황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주택수	150	879	3,648	1,075	5,397	7,209	2,959	21,317

지열시스템 주택이란? (난방 및 냉방)

- ❶ 지열주택은 히트펌프를 통해 연중 약 15℃로 일정한 땅 속의 열을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 ❷ 겨울철에는 지중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히트펌프로 온도를 상승시켜 난방하고, 여름철에는 실내의 높은 열을 지중으로 방출하여 냉방에 이용합니다.
- ❸ 가구당 지원규모는 17.5kW(5RT)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 설치면적 50㎡, 기계실 설치면적 6.6㎡가 필요합니다.

■ 보조금 지원 단가 및 예시

(단위 : 천원, VAT포함)

구 분		설치용량	보조금 지원단가	보조금(예시)
지 열	수직밀폐형	10.5kW	790/kW	8,295
		17.5kW	610/kW	10,675

※ 보조금(예시) 산출식 : 설치용량 X 보조금 지원단가 =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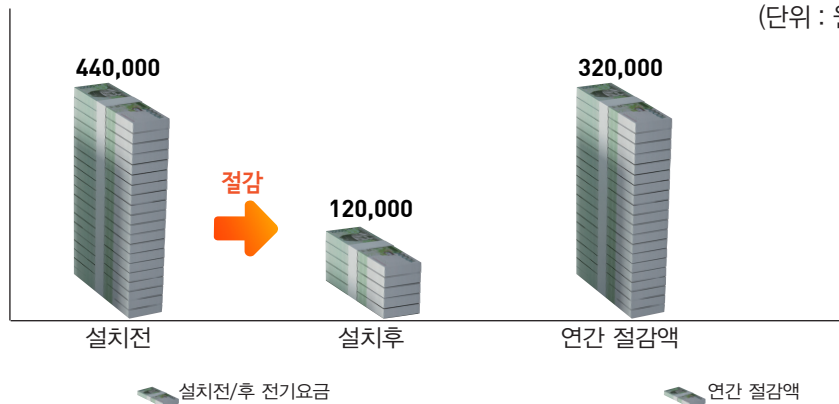
※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액은 참여기업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다수의 참여기업과 협의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설치효과

예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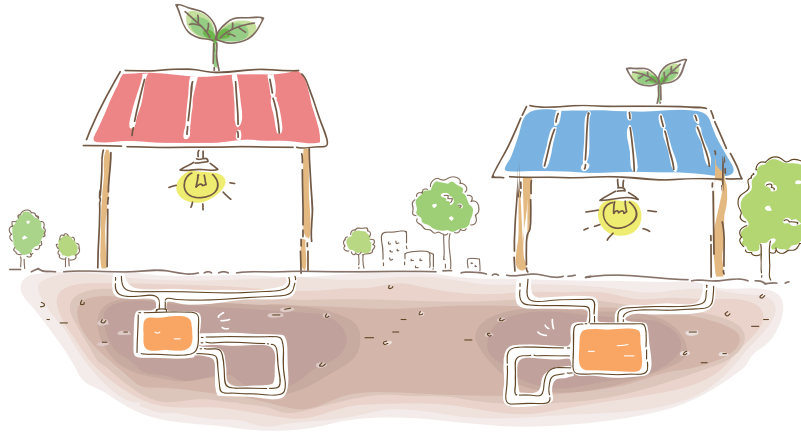
연료가 실내등유인 주택

(단위 : 원)



※ 절감효과(예시) 산출 공식은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절감 효과는 설치 장소 및 환경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여기업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지열 설비 설치 시 주의사항

- ① 안정적인 열원확보 및 성능보장을 위해 천공 깊이를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신청자는 안정적인 열원확보를 위해 설비설치와 관련한 모든 사항(지반여건, 열원 등)에 대해 사전에 참여기업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구분	10.5KW(3RT)	17.5kW(5RT)
천공 깊이	100m 이상 × 2공	150m 이상 × 2공

- ① 이외의 난방설비(가스 · 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① 지열에너지 설비는 냉난방을 같이 하여야 효율이 좋아지는 설비이므로 냉난방을 같이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냉방 설치 시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
- ① 정부에서는 지열 설비 가동을 위해 일반용 전기요금(누진제 미적용)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신청자가 설비 설치 후 별도로 온수기 등을 설치하여 지열설비용 전기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도전(盜電)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신청자는 이점을 유의하여 지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위약금 부과 등)

■ 지열주택 지원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주택수	292	1,411	923	1,348	1,893	5,867

04 연료전지 주택이란? (전기 생산)

- 연료전지란 연료용 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를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해내는 설비로서, 전기 생산뿐 아니라 반응열로 급탕과 난방이 가능합니다.
- 가구당 지원규모는 1kW 이하이며 1kW 설비 설치 시, 약 2㎡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보조금 지원 단가 및 예시

(단위 : 천원, VAT포함)

구 분	설치용량	보조금 지원단가	보조금(예시)
연료전지	1kW	31,570/kW	31,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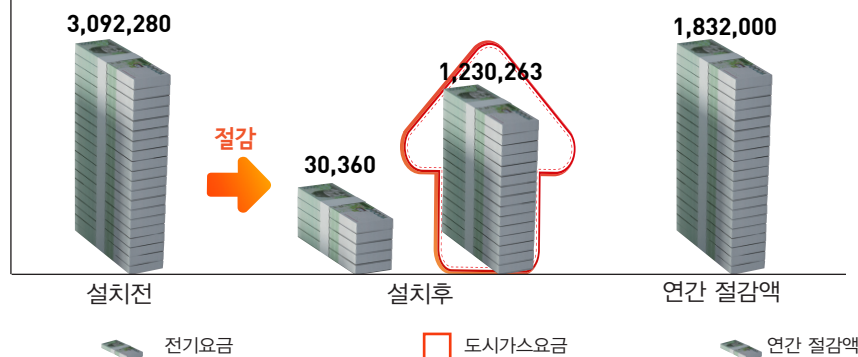
- ※ 보조금(예시) 산출식 : 설치용량 X 보조금 지원단가 = 보조금
- ※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액은 참여기업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다수의 참여기업과 협의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설치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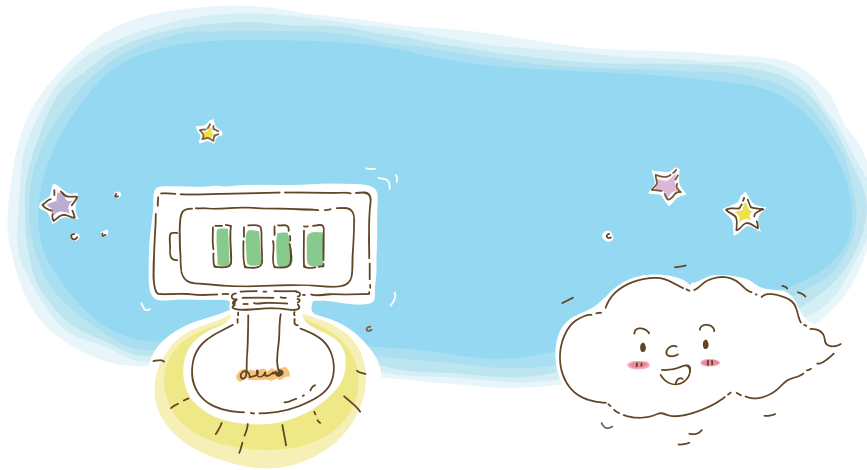
예시1

월 전력사용량이 650kWh인 경우

(단위 : 원)



- ※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전기와 열 생산이 가능하며, 전기 사용량이 많은 주택일수록 절감효과가 큼니다.
- ※ 절감효과(예시) 산출 공식은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절감 효과는 설치 장소 및 환경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여기업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연료전지 설비 설치 시 주의사항

- ① 월 평균 60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설치 및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연료전지 주택 지원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	합계
주택수	957	292	249	234	1,732



[주택지원사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1 주택지원사업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1 표준 설치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설치예정장소의 현장사진 및 약도 등이 필요합니다.

Q2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각각 설치해도 되는지?

A2 설치신청자가 2주택 각각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일치한다면 각각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Q3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언제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나요?

A3 신재생에너지원별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지원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종료됩니다. 또한, 승인된 사업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

구분	설치완료기간
태양광	사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태양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열	사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Q4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어떤 제품을 사용하나요?

A4 주택지원사업으로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효율성 저하 및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 설비를 설치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제한 등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Q5 정부보조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A5 신청자가 시공기업과 체결한 표준 설치계약서에 따른 가상계좌 예치금을 농협 가상계좌에 예치하면 센터가 사업을 승인합니다. 설비 설치 중 참여기업이 정부보조금 중 선급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가 먼저 참여기업에 지급됩니다. 시공이 완료되면 공단 설치확인 담당자가 설치확인 후 가상계좌 예치금과 보조금 잔금이 시공기업으로 지급됩니다.

Q6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령을 희망할 경우, 먼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및 보조금 지원방식을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아 지자체로 제출하면 지자체 보조금을 추가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액이나 지급 방식 등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Q7 참여기업이 아닌 전문기업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7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아닌 전문기업 또는 유사기업에 시공을 맡기실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당해연도 참여기업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하며, 참여기업을 사칭하는 유사기업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Q8 주택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시 한국전력공사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나요?

A8 한국전력공사 측으로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으로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지원사업이 아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RPS 사업입니다.

* RPS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

주택지원사업을 빙자한 사기 피해 조심하세요!

최근 들어 주택지원사업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는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및 센터 지침에 따라 선정된 참여기업을 통해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유사한 기관 또는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인 것처럼 가장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정보로 국민들을 현혹하거나,

정부보조금 없이 소비자 자부담금만으로 저렴하게 설비설치가 가능하다고 유인하여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 저가의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시공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런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센터에서 정한 설비시공기준 미준수, 인증제품 미사용 등으로 인해 저질 불량제품이 설치될 수 있고,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하지 않아 향후 A/S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당기업이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의 등록여부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 제품 및 기업소개' 코너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명칭이나 로고를 도용하거나, 주택지원사업을 빙자하는 사기업체가 접근해오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주택용전력(저압) 전기요금 체계

(단위 : kWh, 원)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1	1,130	51	3,970	101	8,070	150	15,230	201	23,240	251	33,920	310	50,140
2	1,130	52	4,050	102	8,210	152	15,370	202	23,450	252	34,140	320	53,330
3	1,130	53	4,120	103	8,360	153	15,510	203	23,670	253	34,350	330	56,520
4	1,130	54	4,180	104	8,500	154	15,650	204	23,880	254	34,560	340	59,710
5	1,130	55	4,250	105	8,650	155	15,800	204	24,090	255	34,780	350	62,900
6	1,130	56	4,330	106	8,780	156	15,940	206	24,310	256	34,990	360	66,100
7	1,130	57	4,390	107	8,930	157	16,090	207	24,520	257	35,200	370	69,280
8	1,130	58	4,460	108	9,070	158	16,230	208	24,730	258	35,420	380	72,470
9	1,130	59	4,530	109	9,220	159	16,370	209	24,950	259	35,630	390	75,660
10	1,140	60	4,590	110	9,360	160	16,510	210	25,160	260	35,840	400	78,850
11	1,210	61	4,670	111	9,500	161	16,660	211	25,370	261	36,060	410	87,520
12	1,290	62	4,740	112	9,640	162	16,800	212	25,590	262	36,280	420	92,280
13	1,350	63	4,800	113	9,780	163	16,950	213	25,800	263	36,480	430	97,020
14	1,420	64	4,870	114	9,930	164	17,090	214	26,010	264	36,700	440	101,780
15	1,490	65	4,950	115	10,070	165	17,230	215	26,230	265	36,920	450	106,520
16	1,560	66	5,010	116	10,220	166	17,370	216	26,450	266	37,120	460	111,270
17	1,630	67	5,080	117	10,360	167	17,520	217	26,650	267	37,340	470	116,020
18	1,700	68	5,150	118	10,510	168	17,660	218	26,870	268	37,560	480	120,770
19	1,760	69	5,220	119	10,640	169	17,800	219	27,090	269	37,760	490	125,520
20	1,840	70	5,290	120	10,790	170	17,950	220	27,300	270	37,980	500	130,260
21	1,910	71	5,360	121	10,930	171	18,090	221	27,510	271	38,200	510	144,750
22	1,980	72	5,420	122	11,080	172	18,230	222	27,730	272	38,410	520	152,820
23	2,040	73	5,490	123	11,220	173	18,370	223	27,930	273	38,620	530	160,880
24	2,110	74	5,570	124	11,370	174	18,520	224	28,150	274	38,840	540	168,950
25	2,190	75	5,630	125	11,510	175	18,660	225	28,370	275	39,050	550	177,020
26	2,250	76	5,700	126	11,640	176	18,810	226	28,590	276	39,260	560	185,080
27	2,320	77	5,770	127	11,790	177	18,950	227	28,790	277	39,480	570	193,150
28	2,390	78	5,840	128	11,930	178	19,100	228	29,010	278	39,690	580	201,210
29	2,460	79	5,910	129	12,080	179	19,230	229	29,230	279	39,900	590	209,290
30	2,530	80	5,980	130	12,220	180	19,380	230	29,430	280	40,120	600	217,350
31	2,600	81	6,040	131	12,370	181	19,520	231	29,650	281	40,330	620	233,480
32	2,660	82	6,110	132	12,500	182	19,670	232	29,860	282	40,540	640	249,620
33	2,730	83	6,190	133	12,650	183	19,810	233	30,070	283	40,760	660	265,750
34	2,810	84	6,250	134	12,790	184	19,950	234	30,290	284	40,970	680	281,890
35	2,870	85	6,320	135	12,940	185	20,090	235	30,510	285	41,190	700	298,020
36	2,940	86	6,390	136	13,080	186	20,230	236	30,710	286	41,400	720	314,160
37	3,010	87	6,460	137	13,230	187	20,380	237	30,930	287	41,610	740	330,290
38	3,080	88	6,530	138	13,370	188	20,520	238	31,150	288	41,830	760	346,420
39	3,150	89	6,600	139	13,500	189	20,670	239	31,360	289	42,040	780	362,550
40	3,220	90	6,670	140	13,650	190	20,810	240	31,570	290	42,250	800	378,690
41	3,280	91	6,730	141	13,790	191	20,960	241	31,780	291	42,470	820	394,820
42	3,350	92	6,810	142	13,940	192	21,090	242	32,000	292	42,680	840	410,960
43	3,430	93	6,880	143	14,080	193	21,240	243	32,210	293	42,890	860	427,090
44	3,490	94	6,940	144	14,230	194	21,380	244	32,430	294	43,110	880	443,230
45	3,560	95	7,010	145	14,370	195	21,530	245	32,640	295	43,330	900	459,360
46	3,630	96	7,090	146	14,510	196	21,670	246	32,850	296	43,530	920	475,500
47	3,700	97	7,150	147	14,650	197	21,820	247	33,070	297	43,750	940	491,630
48	3,770	98	7,220	148	14,800	198	21,960	248	33,280	298	43,970	960	507,760
49	3,840	99	7,290	149	14,940	199	22,090	249	33,500	299	44,170	980	523,890
50	3,840	100	7,350	150	15,090	200	22,240	250	33,710	300	44,390	1000	540,030

※ 출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전기요금표 2013.11.21자 기준) ※ TV 수신료, 자동차세 할인, 초과요금, 기타 수수료 등은 미포함



최근 주택지원사업을 비롯한 정부보급사업을 빙자한 유사사업이 전국적으로 횡행하여 신청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지원사업이 아닌 유사사업으로 시공된 설비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기대효율이 나오지 않거나, 설비 하자 발생 시 A/S를 받을 수 없어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반드시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신청하셔야만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우. 448-994 경기도 용인시 포은대로 388
www.energy.or.kr